

『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2021~2025)」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,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(안 제2조제2호)
(현행)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
(개정)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
-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예산관련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와의 연계 규정 수정을 담고 있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저출산·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여,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안으로,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제1항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5조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